**2022년 3월 24일자 통합이사회의 결의 - RDC 제644호**

**(2022년 3월 30일 연방관보 제61호에 고시)**

오직 수출용의 목적으로 브라질에서 제조하는 개인위생용품, 화장품 및 향수에 대한 일반 규정을 수립한다.

**국가보건규제청의 통합이사회는** 1999년 1월 26일자 법률 제9,782호의 제7조 III과 제15조 III 및 IV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, 또한 2021년 12월 10일 통합이사회 결의 - RDC 제585호에 의해 승인된 내부 규정 제187조, VI, §1 및 §3의 규정을 고려하여, 2022년 3월 23일에 개최된 회의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, 다음 결의를 채택하기로 의결하며, 이사회 의장인 본인은 이의 고시를 결정한다.

제1조. 본 결의는 오직 수출용의 목적으로 브라질에서 제조하는 개인위생용품, 화장품 및 향수에 대한 일반 규정을 수립한다.

제2조. 오직 수출용의 목적으로 브라질에서 제조하는 개인위생용품, 화장품 및 향수는 Anvisa에 신고하거나 등록할 필요가 없다.

제3조. Anvisa는 수출용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위생용품, 화장품 및 향수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하지 않는다.

제4조. 본 결의의 상태에서 분류된 관련 회사는 관할 당국에서 발급한 허가 또는 위생 면허를 받아야 하며, 개인위생용품, 화장품 또는 향수의 제조 및 수출 활동을 위해서는 Anvisa에서 발급하는 운영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5조. 관련 회사는 수출 전용 제품에 대한 정보를 기록에 보관해야 하며, 이는 보건당국의 제조 유닛 검사를 위한 제조 공정의 초기부터 확인을 포함한다.

§ 1 정보의 특성 및 보관 기간은 현행 보건법에 따라 적용 및 규제를 받는다.

§ 2 관련 회사는 보건당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수출 전용 제품에 대한 모든 정보를 즉시 제공할 의무가 있다.

제6조. 목적지 국가의 법률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관련 회사의 책임이다.

제7조. 본 결의에 포함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1977년 8월 20일자 법률 제6,437호의 조항에 따라 위생에 관한 위반을 구성하며, 이는 적용 가능한 민사, 행정 및 형사적 책임을 침해하지 않는다.

제8조 2008년 12월 9일자 통합이사회의 결의 - RDC 제92호를 취소한다.

제9조. 본 결의는 2022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**안토니우 바라 토레스**